

2주: 사유재산은 정당한 것일까?

-로크와 루소-

1. 로크: “내가 노동한 대가는 전부 나의 것이다.”

◎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이 자연 안에 놓여 있는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어 자신의 것을 보탠다면, 자연의 대상물은 결국 노동한 자의 소유가 된다.-『통치에 대한 두 가지 논고(Two treaties of Government)』

◎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 하지만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는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이 화폐를 받게 되었다.-『통치에 대한 두 가지 논고』

◎ 인간이 이미 결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과 자유, 자산(estate)-내가 재산(property)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통치에 대한 두 가지 논고』

▶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주장한다. “인간이 자연 안에 놓여 있는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어 자신의 것을 보탠다면, 자연의 대상물은 노동한 자의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딴 사과를 자신의 노력이 그 사과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것이라는 말이다. 그저 인간의 노력이 가해지면 그것은 모두 자기의 것이 된다는 말이므로, 밭을 갈면 그 밭도 밭을 갈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돼지를 키우면 그 돼지도 돼지를 키운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유정(油井)을 채굴하면 그 유정 역시 채굴했던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 논리에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문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로크가 ‘열등한 피조물들’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의 권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경쟁에서 소유할 가능성을 박탈당한 타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로크는 두 번째 문제, 즉 우리가 타자로부터 그가 소유할 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다

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내가 밤새도록 모두 땀다면, 내가 딴 사과들은 모두 나의 것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사과를 딸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박탈해버린 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 로크는 우선 누구든 과일이 썩지 않을 만큼만 따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비록 노동이 투입된 것들은 모두 나의 소유가 되지만, 창고에서 그 열매들이 썩을 정도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노동이 투입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타자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제약할 수 있을까? 만약 타자에 대한 사람들의 배려가 그만큼 강했다면, 인간은 오히려 사적 소유가 아니라 타자와의 공적 소유를 지향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사적 소유를 제약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가 화폐라는 것을 도입하여 소유물의 부패 문제를 일소해버려고 했던 것도 결국 이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로크의 사유재산 논리는 항상 타자의 불만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과를 영원히 썩지 않는 화폐와 교환해서 이렇게 화폐 형식으로 축적하게 되는 것이 용인됨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모조리 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로크의 사유재산 논리가 근대 부르주아 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채택되었던 것도 결국 이런 측면 때문이었다. 내가 먼저 노동하여 얻게 된 어떤 것이라도 나는 무한히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데, 분수를 넘을 정도로 마련한 물건들을 모조리 화폐로 바꿔 영원히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 화폐를 통해 무한한 소유를 가능하다고 논하자만 로크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유재산을 무한하게 축적하면 할수록 타자들의 불만도 그에 걸맞게 무한히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로크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 소유하지 못한 타자들의 불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동시에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타자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근대에 상정된 국가기구의 최종적 목적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역설적인 것은 로크의 국가 논리에, 개인의 무한한 사유재산이 부당하다는 그의 무의식적 판단이 함께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유재산제도가 참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든 타자들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유재산을 긍정하자마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보호 장치로서 국가의 강제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3. 루소: “사유재산은 인류사회의 암적 존재이다.”

◎ 조그만 땅에 울타리를 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기에 충분히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최초의 인간이 바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자였다. 말뚝을 잡아 뽑거나 도랑을 채우면서 자신이 동료들에게 “이 사기꾼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만일 땅의 모든 결실들이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땅 그 자체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잊는다면 당신은 타락한 것이다”라고 외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 전쟁, 살인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공포와 불운으로부터 인류를 구제해 주었을까?-『인간불평등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 예컨대 “이 울타리를 세운 것은 나다. 나는 내 노동으로 이 땅을 손에 넣었다”고 우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누가 당신에게 경계선을 정해 주었느냐고 누군가가 그에게 대꾸할 수 있다. (...) 약탈이란 공통된 목적으로 뭉쳐진 적에 대항하여 자기의 동지들을 규합할 수도 없어 혼자서 여럿을 상대해야 하는 이 부자는 드디어 절실한 필요에 따라 일찍이 인간이 궁리해내지 못했던 가장 심오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의 적을 자기의 방어자로 만드는 일이다. (...) 사회와 법률의 기원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이었거나 당연히 이러했을 것이다. 이 사회와 법률은 약자에게 새로운 구속을 부여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줌으로써 자연의 자유를 영원히 파괴해버리는가 하면, 사유재산과 불평등의 법률을 영구히 고정시키고 교묘한 약탈을 당연한 권리로 확립시켜 몇몇 야심가들의 이익을 위해 온 인류를 영원한 노동과 예속 그리고 빈곤에 복종시켰던 것이다.-『인간불평등기원론』

▶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시민사회의 기초가 사유재산제에 있다고 단언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 “조그만 땅에 울타리는 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 즉 로크 혹은 로크를 따른 사람들은 일종의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루소가 사유재산제를 공격했던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사유재산제가 바로 모든 범죄, 전쟁, 살인, 공포, 그리고 불운을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핵심 원인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로크가 주장했던 사유재산제, 그리고 무한한 사적 소유를 가능하도록 만든 화폐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대지와 그 결실들은 몇몇 사람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가할 수 있는 대지조차 전혀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토지 소유자와 토지 경작자라는 구분, 혹은 고정된 계급이 출현하게 된다. 토지 경작자는 자신의 결실을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바쳐야만 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실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루소는 사유재산제가 인간에게 원초적인 갈등과 상호불신의 비극을 가져다 준 제도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는 인류문명에서 도려내야 할 암적 존재로 간주된 것이다. 이미 상당한 사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의 수고로움을 다시 감당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토지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어떻게 쉽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결과 정당하지 못한 제도, 즉 노동하지 않고도 계속 자신의 소유물을 늘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다. 부당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당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법이다. 사유재산제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이 바로 법률과 국가에 의한 강제적 통치였다. 루소에 따르면 국가와 법률은 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유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잠재적 약탈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국가와 법률이 제정한 공권력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사유재산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 원초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토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료 혹은 경찰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의 봉기를 막기 위해 토지를 가지지 못한 관료나 경찰들의 힘을 동원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루소는 이런 몇몇 야심가들의 책략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의 적을 자기의 방어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폭로하게 된 것이다.